

「한국체육대학교 후생복지 규정」

일부개정 2021. 8. 13. 규정 제853호

1. 개정이유

- 학칙 개정(제822호, 2020. 5. 1.)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(제828호, 2020. 11. 23.)에 따른 행정조직의 보직명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대학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의 장 명칭 현행화(안 제5조제2항, 제5조제4항)
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변경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참고)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불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「한국체육대학교 후생복지 규정」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후생복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7인” 을 “7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학처장” 을 “**훈련학생처장**” 으로, “**사무국장, 훈련처장, 생활 관장**” 을 “**교무처장, 사무국장, 생활관장**” 으로, “3인” 을 “3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학생팀장**” 을 “**입시·학생팀장**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**개정**” 을 “**제·개정**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**기타**” 를 “**그 밖의**” 로 한다.

부 칙(제853호, 2021. 8. 1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7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교학처장</u>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<u>사무국장, 훈련처장, 생활 관장</u>으로 하고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교직원 중 <u>3인</u> 이내를 총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<u>학생팀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① ----- --- <u>7명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훈련학생처장</u>----- ----- <u>교무처장, 사무국장, 생활관장</u>----- -----</p> <p>---<u>3명</u>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입시 · 학생팀장</u>-----.</p>
<p>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본 규정의 <u>개정</u> 및 폐지에 관한 사항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기타</u>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</p>	<p>제6조(심의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제 · 개정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의</u> -----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제853호, 2021. 8. 13.)</p> <p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